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1904호
2024년 4월 30일
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공 고 제 8 9 9 호 「화물(여객)자동차운수사업법」 위반(차고지외 밤샘주차) 처분사전 자 동 차 관 리 과 2
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4-89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46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4. 4. 29. ~ 2024. 5. 17.(18일간)
2.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: 「화물(여객)자동차운수사업법」 위반(차고지 외 밤샘주차)
3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

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				
성 명	차량번호	주 소	처분의 원인된 사실	예정된 처분내용 (과징금: 원)
이*락	인천86바**21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4번길 57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박*욱	인천84바**42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전*정	인천84바**53	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40	차고지외밤샘주차	100,000

4.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(T. 032-453-2916)로 직접방문, 우편 및 팩스(F. 032-453-2919)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. 4. 29.

남 동 구 청 장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남동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